

# 2023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추가 신청·접수 공고

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6조 및 제12조, 「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“2023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추가 신청·접수”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10일

한국고용정보원장

## I.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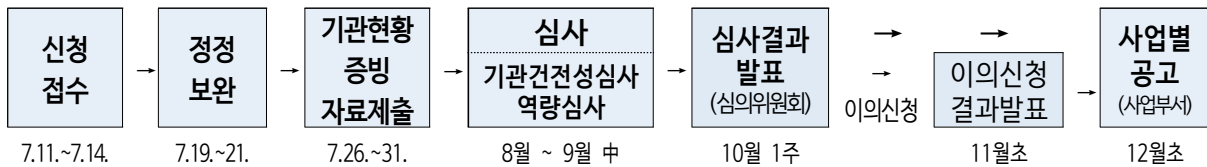
1

### 사업목적

-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자\* 선정 이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본단계로 사업참여에 필요한 공통적인 기본역량 요건을 사전에 검증

\* 민간위탁사업 중 3개사업(국민취업지원제도(본사업, 청년특화),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,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) 수행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

### 2023년도 기본역량심사 추가 신청·접수 절차 (공고일: 7.10.)



☞ '24년 3개 민간위탁사업(국민취업지원제도(본사업, 청년특화),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,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) 수행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'기본역량심사'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, 아래 ①, ②의 경우에는 기본역량심사 신청 후 기관건전성심사만 실시(역량심사 면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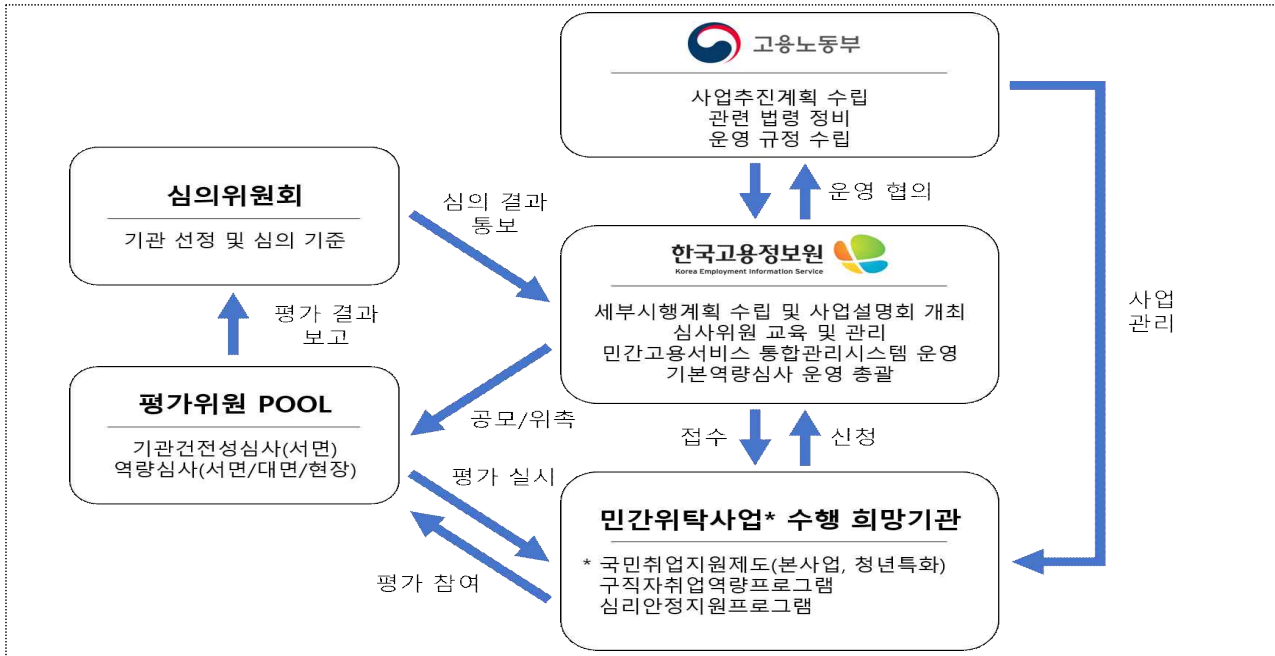
- ① '22년 기본역량심사결과 3년 유효기간 대상기관(실적이 있는 기관이 총점의 100분의 80이상 득점)
- ② 「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」 '21년 실적 인증기관 (인증 유효기간: '22.1.1.~'24.12.31.)

☞ 기본역량심사 통과 기관이라 하여도 개별 사업별 신청자격 등 사업특성에 따른 요건\*은 추가적으로 충족 필요

\* 사업특성에 따른 요건은 '24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('23.12월 공고 예정) 참조

## 2

## 추진 체계



## II. 신청대상 및 접수

### 1

### 신청대상

'24년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\*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(사업자)

* 사업명	사업부서명
국민취업지원제도(본사업, 청년특화)	국민취업지원기획팀
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	고용서비스정책과
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	고용서비스정책과

유의사항

✓ 2023. 4. 6.~4. 14. 사이에 2023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를 신청한 기관은 추가 신청 불필요

신청대상 구분

구분	세부 기준
실적기관	2022.1.1. ~ 12.31. 기간 내 민간위탁사업*을 1개 이상 수행하여 평가등급(결과)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
신규기관	2022.1.1. ~ 12.31. 기간 내 민간위탁사업*을 수행하지 않아 평가등급(결과)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

\* 국민취업지원제도(본사업, 청년특화),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,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

## 2

### 자격제외

- '24년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으로, 아래의 자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(사업자)은 신청 불가

#### [ 자 격 제 외 ]

- 1)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- 2) 4대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자
- 3) 고용노동부의 위탁사업에 참여했던 기관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  - ㉠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에 참여하여 2021년 12월 8일에서 2023년 7월 10일 사이에 위반행위 등에 따른 위탁계약해지 조치를 받은 기관
  - ㉡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참여기관으로서 위탁기관의 계약해지 요청에 의해 2022년 12월 9일에서 2023년 7월 10일 사이에 계약 해지된 기관

\* 국민취업지원제도 사후관리 기관으로서 참여자의 이관 동의 및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약정 해지한 기관은 위에 해당하더라도 기본역량심사 참여 가능

## 3

### 신청접수

- (신청기간) 2023. 7. 11.(화) 10:00 ~ 7. 14.(금) 18:00
  - 신청 내용에 대해 반드시 대표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
    - \* 신청기간 내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제출서류 및 기관현황서를 업로드한 후 반드시 '신청완료' 버튼을 눌러 최종 신청완료 요망
- (신청방법)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(<https://certi.keis.or.kr>)을 통해 온라인 신청
  - 유의사항
    - ✓ 본사와 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은 각각 기본역량심사 신청
  -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「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신청서」 작성

📁 ①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(<https://certi.keis.or.kr>) 접속 → ② 기관회원 가입 및 로그인 → ③ 공고/신청 - 기본역량심사 전체목록 → ④ 기본역량심사(신규기관/실적기관) 추가 접수 공고 → ⑤ 신청서 작성(신청사항 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) 후 제출

\* 신청서 제출 여부는 MY페이지 > 기본역량심사관리 목록화면으로 이동하여 확인

- (기관회원) 해당 기관 대표 계정으로 기관당 1개 계정 개설 가능하며, 신청서 접수시 기관명은 '사업자등록증'의 법인명(단체명) 기재
- 기관 업무 담당자 변경 혹은 담당자 연락처 변경 시 기관회원 정보 수정  
(문의: 한국고용정보원 ☎ 1577-7114)

## ○ 서면 제출서류

① 직업소개사업 등록증(신고필증) 사본 1부(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발급)

\* 유·무료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수행기관은 필수 제출자료이며, 그 외는 제출 제외(신청서상 '기타'로 체크한 경우)

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(관할 세무서장 발급)

\* 본사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등록

\*\* 지사인 경우 본사 사업자등록증 및 본사 법인 등기부등본 등록

③ 기관현황서\* (통합관리시스템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기관현황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)

\* 아래 2개 항목에 해당되는 기관은 기관현황서 제출 불필요

### 기관현황서 제출 제외 기관

① '22년 기본역량심사결과 3년 유효기간 대상기관(실적이 있는 기관이 총점의 100분의 80이상 득점)

② 「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」 '21년 실적 인증기관(인증 유효기간 '22.1.1.~'24.12.31.)

※ 기관현황서 증빙자료는 '기관현황 증빙 자료제출 기간('23.7.26.~7.31.) 내 우편 제출

\* (제출 대상) '23년 기본역량심사 추가 신청기관 중 기관현황서 제출 기관

\* (제출 기간) 2023. 7. 26.(수) ~ 7. 31.(월)

\* (제출 방법) 기관현황서 증빙자료 일체를 '기관명' 폴더로 USB에 저장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

📧 등기우편 제출처 : 7.19.(수) '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> 고객지원 > 공지사항' 게시 예정

④ 기관건전성심사 제출서류는 '원클릭 서류 제출 간소화 시스템'\*을 통해 재정건전성 심사 서류 제출

\* 접속링크 : 7.11.(화) '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> 고객지원 > 공지사항' 게시 예정

구분	기관 제출서류
세금체납	▶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(각 1부) ※ 지정된 기간 내('23.3.1.~7.31.) 발급된 '납세 증명서'로만 제출
신용수준	▶ 사업자 유형에 따른 심사서류 - (개인사업자) 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(발급기간: '23.3.1.~'23.7.31.), 2022년 표준재무제표,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중 택 1 - (법인사업자) 2022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(발급기간: '23.3.1.~'23.7.31.) 중 택 1 - (비영리법인 등)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보고서 * 단, 상기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회계재무 전문가 검토를 통해 인정 여부 판단 ※ 이외 상세사항의 경우, 7.11.(화) '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> 고객지원 > 공지사항' 게시 예정
고용보험료 체납 및 준법성 분야	별도 제출서류 없음

□ (정정·보완기간) 2023. 7. 19.(수) 10:00 ~ 7. 21.(금) 18:00

- 신청 기간 내 신청완료된 기관에 한하여 정정·보완기간 내 일부 항목\* 정정·보완 가능

\* 정정·보완 가능 범위: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았거나, 잘못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

4

신청자격 확인

□ 신청서류 검토 및 자격 제외 요건 확인(7월~8월 중)

□ 자격심사 결과는 이메일, SMS를 통해 별도 통보(8월 중)

### III. 심사기준

- 기본역량심사는 기관건전성심사 및 역량심사 2분야로 실시하며, 기관건전성심사는 총 50점 중 30점 미만인 경우 탈락하고
- 역량심사\* 통과 최저 점수는 100분의 60(150점) 이상이며, 심사영역 중 1개 영역이라도 해당 심사영역 점수의 40% 미만인 경우 과락

\* 실적기관과 신규기관의 특성에 따른 영역과 항목을 서면/대면/현장심사로 나눠 진행

#### [ 심사 항목 및 배점 ]

구분	심사항목	심사방법	제출 심사서류
기관건전성 심사 (50점 만점)	- 준법성 - 재정건전성	- 서면심사	국세 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, 신용수준 증빙자료
역량 심사 (250점 만점)	실적 기관	- 서면심사  *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경우 현장심사 실시 가능	기관현황서, 기관현황 증빙자료
	신규 기관	- 현장심사 - 대면심사  * [가점(10점)] 유관사업운영 이력수준	

1

#### 기관건전성심사

##### ❖ 기관건전성심사 (50점 만점)

↳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을 서면(정량) 심사하며, 총 50점 중 30점 미만인 경우 탈락

□ (준법성 분야) 임금 등 금품체불·최저임금 위반

- 접수일자 기준 2022.1.1. ~ 2023.5.31. 기간 내 임금 등 금품체불·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경우 1건당 10점 감점

\* 금품체불·최저임금 위반 건을 시정하여 행정종결 시 감점사항 없음

심사항목	심사 기준
임금 등 금품채불 이력	▶ 기소의견 송치 1건당 10점 감점
최저임금 위반 이력	▶ 기소의견 송치 1건당 10점 감점
경고처분 이력	▶ 직업안정법에 따른 경고처분 시 1건당 5점 감점

□ (재정건전성 분야) 2023.5.31. 기준 국세, 지방세 및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, 신용 수준에 대해 서면 심사

심사항목	심사 기준						
세금 체납 여부	▶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시 각 <b>10점 감점</b> * 서류 미제출 및 불인정서류 제출(기관정보 불일치, 발급기간 미준수, 발급처 직인 없음, 서류 식별 불가) 시 최대 감점인 10점 감점 적용						
신용 수준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감점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개인 사업자</td> <td>▶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- CC등급(CC+, CC- 포함), C등급(C+, C- 포함): <b>10점 감점</b> - 완전자본잠식(자기자본 0 미만) 또는 D등급: <b>15점 감점</b> ▶ 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* 제출 시 - 500점 이상 ~ 600점 미만: <b>10점 감점</b> - 0점 이상 ~ 500점 미만: <b>15점 감점</b></td> </tr> <tr> <td>법인 사업자</td> <td>▶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- CC등급(CC+, CC- 포함), C등급(C+, C- 포함): <b>10점 감점</b> - 완전자본잠식(자기자본 0 미만) 또는 D등급: <b>15점 감점</b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감점기준	개인 사업자	▶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- CC등급(CC+, CC- 포함), C등급(C+, C- 포함): <b>10점 감점</b> - 완전자본잠식(자기자본 0 미만) 또는 D등급: <b>15점 감점</b> ▶ 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* 제출 시 - 500점 이상 ~ 600점 미만: <b>10점 감점</b> - 0점 이상 ~ 500점 미만: <b>15점 감점</b>	법인 사업자	▶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- CC등급(CC+, CC- 포함), C등급(C+, C- 포함): <b>10점 감점</b> - 완전자본잠식(자기자본 0 미만) 또는 D등급: <b>15점 감점</b>
	구분	감점기준					
개인 사업자	▶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- CC등급(CC+, CC- 포함), C등급(C+, C- 포함): <b>10점 감점</b> - 완전자본잠식(자기자본 0 미만) 또는 D등급: <b>15점 감점</b> ▶ 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* 제출 시 - 500점 이상 ~ 600점 미만: <b>10점 감점</b> - 0점 이상 ~ 500점 미만: <b>15점 감점</b>						
법인 사업자	▶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- CC등급(CC+, CC- 포함), C등급(C+, C- 포함): <b>10점 감점</b> - 완전자본잠식(자기자본 0 미만) 또는 D등급: <b>15점 감점</b>						
* 서류 미제출 및 불인정서류 제출(기관정보 불일치, 발급기간 미준수, 발급처 직인 없음, 서류 식별 불가) 시 최대 감점인 15점 감점 적용							
고용보험료 체납 여부	▶ 고용보험료 체납 시 <b>10점 감점</b>						

## 2

### 역량심사

#### ❖ 역량심사 (250점 만점)

↳ 실적기관과 신규기관의 특성에 따른 영역과 항목을 서면/대면/현장심사

↳ 2022.1.1. ~ 12.31. 기간 내 민간위탁사업\*을 1개 이상 수행하여 평가등급(결과)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실적기관이며, 그 외 기관은 신규기관

\* 국민취업지원제도(본사업, 청년특화),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,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

\*\* 역량심사 총 250점 중 100분의 60(150점) 미만이거나, 4개(실적기관) 또는 3개(신규기관) 심사영역 중 1개 영역이라도 해당 심사영역 점수의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탈락

□ 실적기관

○ 실적기관은 4개 심사영역(기관경영·리더십, 서비스운영 및 관리, 사업실적, 인적자원관리)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실시

(단, 실적기관이라도 사업 수행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경우\*에는 현장심사 실시)

\* 국민취업지원제도 D등급,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및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C등급

< 실적기관 역량심사 지표 >

심사 영역	세부 심사항목	심사 영역	세부 심사항목
기관경영·리더십 (45)	- 민간위탁 기관책임자 관련경력(10) - 고용서비스 동향 이해(10) - 민간위탁사업의 역할 이해(10) - 민간위탁 고용서비스에 대한 기관의 중장기(3년) 발전계획 수립 (15)	인적자원 관리 (55)	- 업무역량관리 적절성(20) - 직무역량개발지원 적절성(10) - 인력활용의 체계성 : 업무분장(10) - 임금관리 및 복리후생체계의 운영(15)
사업실적 (90)	- 해당사업 수행실적 (60) - 유사사업 및 기타 정부지원 등 추진실적(30)	서비스 운영 및 관리(60)	- 운영매뉴얼 수립(10) - 서비스의 체계적 운영 및 점검개선(30) - 사례관리(20)

\* 역량심사 통과 최저 점수는 100분의 60(150점)으로 하되, 4개 심사영역 중 1개 영역이라도 해당 심사영역 점수의 40%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처리

□신규기관

○신규기관은 3개 심사영역(기관경영·리더십, 서비스운영 및 관리, 인적자원 관리, 가점)에 대해 대면\* 또는 현장심사를 실시

\* 사업운영 이력이 없는 신규기관으로서 현장심사가 어려운 경우, 심사장을 방문하여 대면심사 진행

<신규기관 역량심사 지표>

심사 영역	세부 심사항목	심사 영역	세부 심사항목
기관경영·리더십 (75)	- 민간위탁 기관책임자 관련경력(10) - 고용서비스 동향 이해(20) - 민간위탁사업의 역할 이해(25) - 민간위탁 고용서비스에 대한 기관의 중장기(3년) 발전계획 수립 (20)	인적자원 관리 (85)	- 업무역량관리 적절성(20) - 직무역량개발지원 적절성(10) - 인력활용의 체계성 : 업무분장(35) - 임금관리 및 복리후생체계의 운영(20)
서비스 운영 및 관리 (90)	- 운영매뉴얼 수립(15) - 서비스의 체계적 운영 및 점검개선(50) - 사례관리(25)	가점 (10)	- 유관사업운영 이력 수준(10) * 최대 10점의 한도 내에서 가점 부여

\* 역량심사 통과 최저 점수는 100분의 60(150점)으로 하되, 3개 심사영역 중 1개 영역이라도 해당 심사영역 점수의 40%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처리



## IV. 심사결과 발표 및 이의신청

### □ 심사결과 발표

○ (일정) 2023. 10월 1주

○ (방법)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심사결과 발표

\* 심사결과 발표 일정은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별도 공지

### □ 이의신청

○ (신청대상) 기본역량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(각 심사분야별 신청)

심사분야	이의신청 기관
기관건전성심사	▶준법성 및 재정건전성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
역량심사	▶역량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

○ (신청기간) 심사결과 발표 후 14일 이내

○ (신청방법)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

○ (결과발표) 2023. 11월 초

## V. 유효기간

□ 기본역량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심사 결과를 받은날로부터 1년임

○ 실적이 있는 기관이 총점의 100분의 80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함

- 단, 유효기간이 3년인 경우도 그 기간동안 역량심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매년 기관건전성심사는 받아야 함

## VI. 기타사항

- 기본역량심사 결과 발표 이후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가 위조·변조되거나 허위 기재되는 등 부정행위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본역량심사 통과를 취소할 수 있음
- 원활한 심사·평가 운영을 위하여 기 제출한 서류 이외의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- 문의처

문의 내용	연락처
○ 기본역량심사 문의	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혁신팀 ☎ 043-870-8580, 8804
○ 입문 및 역량강화 컨설팅 문의	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혁신팀 ☎ 043-870-8283
○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문의	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혁신팀 ☎ 1577-7114

구분	주요 내용	추진 일정 (예정)
1. 계획 공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23년 기본역량심사 추가 신청·접수 공고</li> </ul>	'23.7.10.(월)
2. 신청·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23년 기본역량심사 추가 신청·접수</li> <li>※ 제출 서류: ①신청서, ②직업소개사업 등록증(신고필증), ③사업자등록증, ④기관현황서*, ⑤기관건정성 증빙 자료**</li> <li>* ②2년 기본역량심사 결과 3년 유효기간 대상기관, ⑥「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」 '21년 실적 인증기관은 기관현황서 제출 제외</li> <li>** 세금체납 여부, 신용수준 증빙 자료</li> </ul>	'23.7.11.(화) ~ 7.14.(금)
3. 신청서류 정정·보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23년 기본역량심사 신청 서류 정정·보완</li> <li>※ 기관현황서는 정정·보완 불가</li> </ul>	'23.7.19.(수) ~ 7.21.(금)
4. 기관현황 증빙 자료 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관현황 증빙 자료 제출</li> <li>※ 기관현황서를 증빙하기 위한 각종 자료 일체</li> </ul>	'23.7.26.(수) ~ 7.31.(월)
5. 심사 진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관건정성심사(50점) 및 역량심사(250점) 진행</li> </ul>	'23. 8월~9월
6. 심사결과 발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심사 결과에 따른 결과 발표</li> </ul>	'23. 10월 1주
7. 이의신청 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결과발표에 대한 이의신청</li> </ul>	심사결과 발표 후 14일 이내
8. 이의신청 결과 발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의신청 결과 발표</li> </ul>	'23. 11월 초

※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.

□ 기관건전성심사(50점)

심사 구분	심사항목	심사기준						
준법성 심사	임금 등 금품채불이력	• 기소의견 송치 1건당 10점 감점						
	최저임금 위반 이력	• 기소의견 송치 1건당 10점 감점						
	경고 처분 이력	• 직업안정법에 따른 경고처분 시 1건당 5점 감점						
재정 건전성 심사	세금 체납 여부	• 국세 체납 시 10점 감점 • 지방세 체납 시 10점 감점 ※ 서류 미제출 및 불인정서류(기관정보 불일치, 발급기간 미준수, 발급처 직인 없음, 서류 식별 불가) 시 최대 감점인 10점 감점 적용						
	신용 수준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감점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개인 사업자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CC등급(CC+, CC- 포함), C등급(C+, C- 포함): 10점 감점</li> <li>- 완전자본잠식(자기자본 0 미만) 또는 D등급: 15점 감점</li> </ul> </li> <li>▶ 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* 제출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500점 이상 ~ 600점 미만: 10점 감점</li> <li>- 0점 이상 ~ 500점 미만: 15점 감점</li> </ul> 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>법인 사업자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CC등급(CC+, CC- 포함), C등급(C+, C- 포함): 10점 감점</li> <li>- 완전자본잠식(자기자본 0 미만) 또는 D등급: 15점 감점</li> </ul> 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서류 미제출 및 불인정서류(기관정보 불일치, 발급기간 미준수, 발급처 직인 없음, 서류 식별 불가) 제출 시 최대 감점인 15점 감점 적용</p>	구분	감점기준	개인 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CC등급(CC+, CC- 포함), C등급(C+, C- 포함): 10점 감점</li> <li>- 완전자본잠식(자기자본 0 미만) 또는 D등급: 15점 감점</li> </ul> </li> <li>▶ 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* 제출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500점 이상 ~ 600점 미만: 10점 감점</li> <li>- 0점 이상 ~ 500점 미만: 15점 감점</li> </ul> </li> </ul>	법인 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CC등급(CC+, CC- 포함), C등급(C+, C- 포함): 10점 감점</li> <li>- 완전자본잠식(자기자본 0 미만) 또는 D등급: 15점 감점</li> </ul> </li> </ul>
	구분	감점기준						
개인 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CC등급(CC+, CC- 포함), C등급(C+, C- 포함): 10점 감점</li> <li>- 완전자본잠식(자기자본 0 미만) 또는 D등급: 15점 감점</li> </ul> </li> <li>▶ 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* 제출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500점 이상 ~ 600점 미만: 10점 감점</li> <li>- 0점 이상 ~ 500점 미만: 15점 감점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
법인 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CC등급(CC+, CC- 포함), C등급(C+, C- 포함): 10점 감점</li> <li>- 완전자본잠식(자기자본 0 미만) 또는 D등급: 15점 감점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
고용보험료 체납 여부	• 고용보험료 체납 시 10점 감점							

□ 역량심사(250점)

○ 실적기관

심사 영역	세부 심사항목	심사 영역	세부 심사항목
기관경영 리더십 (4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민간위탁 기관책임자 관련경력(10)</li> <li>- 고용서비스 동향 이해(10)</li> <li>- 민간위탁사업의 역할 이해(10)</li> <li>- 민간위탁 고용서비스에 대한 기관의 중장기(3년) 발전계획 수립 (15)</li> </ul>	인적자원 관리 (5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업무역량관리 적절성(20)</li> <li>- 직무역량개발지원 적절성(10)</li> <li>- 인력활용의 체계성 : 업무분장(10)</li> <li>- 임금관리 및 복리후생체계의 운영(15)</li> </ul>
사업실적 (9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사업 수행실적 (60)</li> <li>- 유사사업 및 기타 정부지원 등 추진실적(30)</li> </ul>	서비스 운영 및 관리(6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운영매뉴얼 수립(10)</li> <li>- 서비스의 체계적 운영 및 점검개선(30)</li> <li>- 사례관리(20)</li> </ul>

○ 신규기관

심사 영역	세부 심사항목	심사 영역	세부 심사항목
기관경영 리더십 (7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민간위탁 기관책임자 관련경력(10)</li> <li>- 고용서비스 동향 이해(20)</li> <li>- 민간위탁사업의 역할 이해(25)</li> <li>- 민간위탁 고용서비스에 대한 기관의 중장기(3년) 발전계획 수립 (20)</li> </ul>	인적자원 관리 (8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업무역량관리 적절성(20)</li> <li>- 직무역량개발지원 적절성(10)</li> <li>- 인력활용의 체계성 : 업무분장(35)</li> <li>- 임금관리 및 복리후생체계의 운영(20)</li> </ul>
서비스 운영 및 관리 (9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운영매뉴얼 수립(15)</li> <li>- 서비스의 체계적 운영 및 점검개선(50)</li> <li>- 사례관리(25)</li> </ul>	가점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관사업운영 이력 수준(10)</li> <li>* 최대 10점의 한도 내에서 가점 부여</li> </ul>